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Organisation des Rettungsdienstes in Deutschland

김기영*
Kim, Ki Young

요약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 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keywords : 독일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 응급구조사, 교육, 의료

1. 서론

응급구조의 모든 응급의료차량들, 소방차 및 경찰차들이 도로상의 응급구조현장에서 특별권한 및 길을 제 공받을 수 있는 권한(Sonder- und Wegerecht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대적인 응급구조는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랑데뷰 시스템(Rendezvous-System)에서 특별권한의 요구시 책임에 대해 당연히 법률에서 직접 도출될 수는 없는 법적문제가 제기 된다.

특히 독일의 학계에는 응급의사가 원래는 응급의가 탑승하지 않고 응급구조사만이 탑승하고 있는 구조차량(RTW)에 탑승한 다음에도 응급구조차량(NEF)의 우선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응급구조차량(NEF)이 마찬가지로 특별한 시스널을 따르거나 구조차량(RTW)이 우선 주행권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지 만 다른 문제는 허용성에 따라 독일판례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독일은 4가지 종류의 환자 이송 수단을 구분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구조차량(RTW): 응급구조사가 출동함
- 응급구조차량(NEF) : 의사와 운전자가 출동함

*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E-mail : kim2201@korea.ac.kr

- 응급구조차량(NEF) : 중증환자시 운영되며, 응급구조사와 운전자가 출동함
- EMS helicopter(HEMS) : 중증환자나 병원간 이송시 활용됨, 의사, paramedic, 조종사가 출동함

2.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연합은 -가령 통일적인 유럽내의 긴급전화번호 112¹⁾ 혹은 응급구조수단의 유럽전역의 규정²⁾과 같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통일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³⁾

독일연방주들은 또 다시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쉘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 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⁴⁾

응급구조는 자신의 지역내에서만 운영(지방응급구조서비스) 혹은 도시국가들과 많은 더 큰 도시들과 같은 직업적인 소방서(BF)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조직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구조는 주로 적십자사(DRK), 사마리안 단체(Arbeiter Samariter Bund (ASB)), Johanniter 사고지원(Johanniter Unfallhilfe (JUH)), die Malteser 기관 및 일부 민간조직(가령 프로메디카(Promedica))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구조는 연방군대(Bundeswehr), 독일 구조항공감시(Deutschen Rettungsflugwacht (DRF)), ADAC 기관과 독일내무성(BMI)이 담당하는 재난사태를 위해 제공되는 헬리콥터, 산악구조 및 선박구조(DGzRS), 독일생명구조협회(DLRG) 및 해상감시(Wasserwacht)에 의해 운영된다.

구조업무의 운영에 대해서는 구조감시와 응급의사의 지원지점에 충분한 수의 설비와 유지업무, 응급구조서비스의 영역의 동일한 서비스제공을 보장하고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지원기간내에 상시대기업무를 보장하고 응급구조본부내의 대기업무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의 기관은 일반적으로 응급구조사건의 관리를 위해 예방하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조치들을 조정하는 기술적인 투입지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가령 쉘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 SH) 제7조 제2항).

3. 응급인력

응급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가 아닌 인력은 주로 교육단계들을 응급업무지원인력(Rettungsdiensthelfer), 구급대원(Rettungssanitäter)와 구급사(Rettungsassistent)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구급사법(RettAssG)에서 오로지 후자가 연방법에서 규율하고 있다.⁵⁾ 뿐만 아니라 각주들의 입법권하에 있는 구조업무법률들에

1) Entscheidung des Rates vom 29. 7. 1991 zur Einführung einer einheitlichen europäischen Notrufnummer (91/396/EWG), ABl. EG Nr. L 217 vom 6. 8. 1991 S. 0031-0032.

2) DIN EN 1789.

3) 유럽연합조약(EGV) 제3조 제1항p, 제5항 제2항이외에도 유럽연합조약(EGV) 참조.

4) 자세한 것은 Nimis, Sonderrechte im Rettungsdienst - Sonderprobleme?, NZV 2009, 582.

5) 독일 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구급사의 직업에 대한 입법권은 연방관할이다.; 이에 대해서는 Kern, in: Laufs/Kern (Hrsg.), Handbuch des Arztrechts, 4. Aufl. 2010, § 17 a, Rdnr. 11.

서 “적절한 자(geeignete Person)“ (가령 Bayern주의 구조업무법(BayRDG) 제43조 제1항 제1문 참조⁶⁾와 같은 개념들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전문적으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수송차량 운전자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몇몇 주들의 구조법률들은 구조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전문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가령 Nordrhein-Westfalen주의 구조법(RettG-NRW) 제4조 4항⁷⁾ 참조). Bayern주에서도 2014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차량(NEF)의 운전자는 최소한 구급대원자격이 있어야 한다(Bayern주 구조업무법(BayRDG) 제43조 제2항 제4문, 제55조 제7항). 또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구조인력의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한다.

4. 결론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독일의 역사에서 우선 응급구조사 공식교육이 없었으며, 많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와 군대 대신에 봉사하는 젊은 사람들로 응급의료체계의 인력이 이용되어 왔다. 응급구조사교육은 연방정부의 법이 1989년에 통과됨으로써 2년 과정의 응급구조사 훈련을 받은 후에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보도록 되었는데, 최근의 입법으로 응급구조사법은 응급구조서비스 영역에서 3년간의 직업교육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의 질적인 수준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계속해 문제없이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복잡한 의료지도체계가 필요없으며, 병원전 인력은 의사의 보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독일 응급구조사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의사와 권한의 분배에서 명확한 한계를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응급의사가 도착할 때까지는 침습적인 조치들도 취할 수 있다고 한다.⁸⁾

참고문헌

- Brose, Johannes**, Aufgaben und Befugnisse nichtärztlichen Rettungsdienstpersonals, VersR 2014, 1172.
Nimis, Sonderrechte im Rettungsdienst - Sonderprobleme?, NZV 2009, 582.
Laufs/Kern (Hrsg.), Handbuch des Arztrechts, 4. Aufl. 2010.
Pießkalla, Zur Fahrlässigkeitsstrafbarkeit nach §§ 223, 229, 222 und § 315c StGB bei Unfällen im Rahmen von Einsatzfahrten, NZV 2007, 438.

6) Bayerisches Rettungsdienstgesetz (BayRDG) v. 22. 7. 2008, GVBl. S. 429.

7) Gesetz über den Rettungsdienst sowie die Notfallrettung und den Krankentransport durch Unternehmen (RettG-NRW) v. 24. 11. 1992, GV. NRW. S. 458; KTW: RDH; RTW: RS bzw. bestandene staatliche RA-Prüfung (§ 4 RettAssG); NEF: RA.

8) LG München VersR 2014, 1086. 이에 대해서는 Brose, Aufgaben und Befugnisse nichtärztlichen Rettungsdienstpersonals, VersR 2014, 1172.